

실손의료비보장 계약전환제도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및 방법)

- ① 이 특별약관은 이미 체결되어 있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계약(이하 "전환전계약"이라 합니다.)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026년 5월 6일 이후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계약전환용)(이하 "전환후계약"이라 합니다.)으로의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별도 심사없이 전환합니다.
 1. 보장종목 : 상해담보만 가입한 계약자가 질병담보를 가입하고자 하거나 질병담보만 가입한 계약자가 상해담보를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2. 전환전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지 않은 경우
 3. 전환청약을 철회하여 전환전계약으로 환원한 이후 재차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
 4. 전환후 계약에서 신규로 보장하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전환 신청 직전 최대 1년간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 입원 2) 수술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② 제1항의 전환전계약과 전환후계약의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제2조 (전환후계약의 보장종목 및 공제내용 등)

전환후계약의 보장종목은 전환전계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환후계약과 전환전계약의 보장종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하여 드립니다.

제3조 (전환후계약의 보장개시일)

- ① 회사는 전환후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전환후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환일부터 전환전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회사는 전환전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전환전계약의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계약전환 청약의 철회)

- ① 전환후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청약의 철회)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전환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날부터 철회 신청일 사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정합니다.

제5조 (계약전환의 무효)

전환후계약이 다음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날부터 제3조(전환후계약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전환전계약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1. 전환후계약의 청약이 철회된 경우
2. 전환후계약의 보통약관 “약관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조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3. 회사가 이 특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자가 전환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

제6조(전환전 계약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이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전환을 하는 경우 전환전계약의 “계약전 알릴의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전환후계약에도 계속되며 전환후계약의 최

대 재가입기간 만료시점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